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1025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신창주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422,913,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913,92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의 대표자인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 상대처	피보증인
1	D	558,000,000원	2014. 9. 22.	2015. 9. 17.	중소기업은행	C
2	E	72,000,000원	2014. 9. 22.	2015. 9. 17.	중소기업은행	C
3	F	206,550,000원	2017. 8. 8.	2018. 8. 7.	중소기업은행	C
4	G	396,000,000원	2018. 4. 16.	2028. 4. 14.	중소기업은행	C

5	H	236,250,000원	2018. 7. 16.	2019. 7. 15.	중소기업은행	C
6	I	127,500,000원	2019. 3. 20.	2020. 3. 19.	중소기업은행	C

3) C과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¹⁾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C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2. 23.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262,754,2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원고의 C과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금	미수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합계
1,262,754,236원	13,008,096원	6,115,510원	3,340,340원	1,285,218,182원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등

1) B은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5,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2) B은 2019.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3) B은 2019.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제2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4) 피고는 2019. 4. 1. B의 배우자인 K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임의경매 등

1) J은행은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21. 4. 12.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545,000,000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에게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B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로 제1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공동담보가액인 422,913,928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64,000,000원 - J은행에 대한 채무액 198,068,023원 -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38,000,000원 - 경매비용 5,018,0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22,913,9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은 2019. 3. 8.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나, 2019. 3. 22.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여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C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출금에 관한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장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12. 23. 기업은행에 대한 C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은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은 약 410,000,000원이며(갑 제9호증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664,000,000원), 그 외에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② B은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1,285,218,182원, J은행에 198,068,023원, 신용보증기금에 208,500,000원, 피고에게 290,000,000원 합계 1,981,786,20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지만,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만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B은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 C 소유의 화성시 M 토지 등 11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가 2019. 12. 23.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20. 2. 3.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변제액 179,884,840원)를 마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은 1,285,218,182원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179,884,840원을 상회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B에게 2015. 11. 4.경부터 2017. 6. 13.경까지 합계 290,000,000원을 대여하여 224,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B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못하자 제2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이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B의 지인으로 B과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B에게 돈을 대여하여 변제기로부터 1년이 넘도록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B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가액배상 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취소되어야 할 사해행위 부분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 감소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인바,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곤란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물반환으로 인한 원상회복보다 가액배상으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인해 채권자가 더 큰 채권 만족을 얻는 것은 사해행위취소 제도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 하도록 한다면,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위 대법원 2004다67806 판결 참조)하여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의 액수만큼만 가액배상 하도록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선희, 판사 이희수, 판사 박 명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월근론크리트조

면 적 : 제5층 호 79.04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의왕시 대 5459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4590분의 34.747

1)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10%,
2019. 4. 1.부터 연 8%